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41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3월 10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청탁금지법」은 신고대상의 범위가 공직자들의 배우자까지 이고, 신고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들에게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대상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, 신고방법을 명시하고자 함.

또한 안 제10조제3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신고대상을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수정함(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).
-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10조 제3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학생선수 및 학부모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
하기로 약속하는” 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 으로, “해당
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” 를 “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”
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신이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
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2.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
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

안 제10조제2항 중 “학생선수 및 학부모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금품등” 을
“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
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시할 수
있다” 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게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<u>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실시하여야</u></p> <p><u>한다.</u>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금품등”이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청렴 문화 조성)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자신이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2.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

② 학생선수, 학부모,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 · 제11조 (생략)</p>	<p><u>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 · 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